

공시송달 공고

『장애인 복지법』 제32조의3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환 대상자에게 반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·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 안내 공시송달

2. 공시송달대상 : 붙임 참조

3. 공고 기간 : 2024. 4. 5. ~ 2024. 4. 22. (18일간)

4. 공시송달 내용

- 장애인의 자격변동(사망 및 재판정 미이행 등 취소 사유)가 발생할 시에는 『장애인 복지법』 제32조의3에 의거 기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,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『장애인 복지법』 제90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처 :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(☎ 031-324-8604)

풍덕천1동장

[붙임]

공시송달 대상

대상자	주소	자동차번호	표지번호	미배달 사유
최*철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47, 1**동 1**3호	54무64**	56400002017030**	2024-03-25 수취인불명
권*식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23번길 35, 1**동 **3호	01어29**	56400002018007**	2024-03-22 폐문부재